

제 호

청년정책 분석·평가지원기관 지정서

1. 기관명 :
2. 대표자 :
3. 소재지 :

「청년기본법」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
위 기관을 청년정책 분석·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무총리 직인

